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변재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85 발의연월일: 2021. 8. 10.

발 의 자 : 변재일 · 강선우 · 안규백

양정숙 • 이용빈 • 이장섭

이정문 • 이학영 • 임호선

천준호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관련 분쟁의 내용도 고도화·복잡화되고 있으며, 특히 5G 상용화 이후 불완전한 품질로 인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임.

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통신분 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되었으나 위원 수 부족, 지원조직의 부재, 조정안 불수락으로 인한 조정불성립 등의 사유로 분쟁조정 처리가 지연되면 서 이용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.

지난해 9월을 기준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분쟁의 64.4%는 법으로 규정된 1차 처리기간 기준일인 60일을 초과하였고 최대법정처리 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20%에 달하였음.

이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 증원 및 연임 제한 완화, 지원 조직 근거 마련,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등 조치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통신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(안 제4 5조의2, 제45조의6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####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제2항 중 "10명"을 "30명"으로, "구성한다"를 "구성하되, 이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한 차례만 연임할"을 "연임할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분쟁조정위원회"를 "분쟁조정위원회 및 제5항에 따른 사무조직"으로한다.

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. 제45조의6부터 제45조의8까지를 각각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로

하고.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. 제45조의9(종전의 제45조의

8)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45조의6"을 "제45조의7"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제45조의7제2항"을 "제45조의8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제45조의7제3항"을 "제45조의8제3항"으로 한다.

제45조의6(직권조정결정)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

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이하 "직권조정결정"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-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- 1.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
- 2.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
- 3.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③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(主文)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, 그 정본(正本) 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-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한다.
-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

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2의2.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45조의2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의2(통신분쟁조정위원회	제45조의2(통신분쟁조정위원회
설치 및 구성) ① (생 략)	설치 및 구성) ① (현행과 같
	슬)
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	②
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	
원장 1명을 포함하여 <u>10명</u> 이	<u>30명</u>
하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</u> .	<u>구성하되, 이 중 5</u>
	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	4
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	연임할
연임할 수 있다.	
<u> &lt;신 설&gt;</u>	⑤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
	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
	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분쟁조
	정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조직을
	<u>둘 수 있다.</u>
⑤ 그 밖에 <u>분쟁조정위원회</u> 의	<u>⑥</u> <u>분쟁조정위원회 및</u>
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	제5항에 따른 사무조직
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제45조의6(직권조정결정) ① 분쟁
	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

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 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 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 정(이하 "직권조정결정"이라 한 다)을 할 수 있다.

- ②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- 1.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
- 2.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
- 3.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③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 (主文)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 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·날인하여야 하며, 그 정본(正本)을 지체 없 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.
-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결

중지) (생략)

(생 략)
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.

1. • 2. (생 략)

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 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
- ⑤ 제4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 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 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 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 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6(분쟁조정의 거부 및 제45조의7(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) (현행 제45조의6과 같음) 제45조의7(분쟁조정의 효력 등) 제45조의8(분쟁조정의 효력 등) (현행 제45조의7과 같음)

제45조의8(조정의 종결) ① 조정 제45조의9(조정의 종결) ① -----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### <신 설>

- 3. <u>제45조의6</u>에 따라 분쟁조정 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 우
- 4. 당사자가 <u>제45조의7제2항</u>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. <u>제45조의7제3항</u>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
- 6. (생략)
- ② (생략)

2의2.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
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
3. <u>제45조의7</u>
-
4 <u>제45</u> 조의8제2항
5. <u>제45조의8제3항</u>
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